

수신 대한화장품협회장

(경유)

제목 업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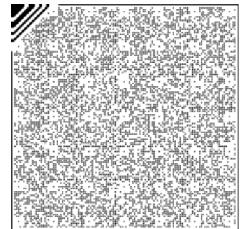
2. 「화장품법」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8항, 제10항 및 「화장품 법령 · 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책임판매관리자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는 매년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3. 다만, 제도 시행 초기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업계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니, 귀 기관은 '22년 ~ '25년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 2026년 3월 31일까지 재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자 및 미이수자 현황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가 폐업을 한 경우 교육 대상자에서 제외, 관리자가 퇴사 또는 보직 변경 등의 사유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 이수

4. 아울러, 재교육 대상자의 경우 2026년 교육 의무는 이와 별도로 실시('26년 3월 이후) 하여야 하며, 앞으로 교육 미이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책임판매관리자 또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가 변경된 경우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 신고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책임판매관리자 등 변경 신고 절차 :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회원가입 → 전자민원/보고 → 전자민원 신청 → 민원사무목록 '화장품책임판매업변경등록'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변경신고' 선택. 끝.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주무관

최용규

행정사무관

천세경

화장품정책과 2026. 1. 7.

과장 김지연

협조자

시행 화장품정책과-119

(2026. 1. 7.)

접수

우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 www.mfds.go.kr

전화번호 043-719-3406

팩스번호 043-719-3400

/ cyk81@korea.kr

/ 비공개(5)

빛나는 발걸음, 새로운 길